

백인대장 고3전문관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 (제8조 관련)

2019년 11월 1일 현재

교습과정	교습과목	정원 (반당)	월교습시간 (분)	월교습비(원)	교습 기간 (○월)	기타경비	
						구분	금액(원)
보습단과	고등수학1	61	1440	3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2	61	2160	4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3	61	720	1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4	61	480	1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5	61	2400	450,000	4주		0
진학지도	컨설팅1	61	90	3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2	61	90	15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3	61	120	4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4	61	120	25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5	61	240	600,000	1주		0
진학지도	컨설팅6	61	240	300,000	1주		0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19년 11월 1일

()학원설립·운영자(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서명 또는 인)

- 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 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 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 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